

항소 제기

일반적으로, 소득세 관련 사안에 대한 환급 청구 또는 조치 통지서(Notice of Action)에 대한 프랜차이즈 세무국(Franchise Tax Board, FTB)의 조치, 또는 사업세 관련 사안에 대해 California 주 조세수수료국(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CDTFA) 항소국(Appeals Bureau)이 내린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FTB에 이의 제기 또는 환급 청구를 제출하면, FTB는 조치 통지서(NOА)를 발행하여 해당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확정합니다. CDTFA의 경우, 재산정 청원 또는 환급 청구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을 발행합니다. FTB의 NOA 또는 CDTFA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세심판국(The Office of Tax Appeals, OTA)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FTB에서 6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은 환급 청구, 이자 감면 요청 또는 무고한 배우자 구제 요청에 대해서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OTA에 항소를 제기하려면 NOA 또는 결정이 발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NOA 또는 결정이 발행된 후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OTA에 대한 항소는 CDTFA가 결정을 내린 후 30일 이내, FTB 가 이의 제기에 대한 NOA를 발부한 후 30일 이내, 또는 FTB가 환급 청구를 거부한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OTA에 항소하지 않으면 OTA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납세자가 제출한 환급 청구, 이자 감면 요청 또는 무고한 배우자 구제 요청에 대해 FTB가 6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FTB가 환급 청구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OTA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려면 조세심판국 포털(Office of Tax Appeals Portal, OTAP)을 방문하거나 OTA 양식 L-01을 작성하십시오. 항소의 근거를 반드시 설명하십시오. 항소장은 공식 법률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비공식적인 언어로 작성된 서신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OTA 양식 L-01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항소장에 다음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FTB의 조치에 대한 항소의 경우 다음을 포함하십시오.

- 이름
-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 또는 납세자 식별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
- 주소 및 전화번호 (본인 및 대리인, 해당되는 경우)
- 이메일 주소 (본인 및 대리인, 해당되는 경우)
- 항소 대상 통지서 사본. FTB가 환급 청구, 무고한 배우자 구제 요청(공동 신고자 중 한 명이 조세 부담으로부터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이자 감면 요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청구서, 요청서 또는 결정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과세 연도
- 귀하의 입장에 대한 사실 관계 및 구체적인 사유(법적 근거 포함)
- 관련 금액 또는 추정 금액(알고 있는 경우)
- 금액 중 인정하는 부분
- 서명(본인 및 대리인, 해당되는 시)

• CDTFA 조치에 대한 항소 시:

- 이름
- 주소 및 전화번호 (본인 및 대리인, 해당되는 경우)
- 이메일 주소 (본인 및 대리인, 해당되는 경우)
- CDTFA의 사건 ID 및 계정 번호
- 귀하의 입장에 대한 사실 관계 및 구체적인 사유 (법적 근거 포함)
- 관련 금액 또는 추정 금액(알고 있는 경우)
- 금액 중 인정하는 부분
- CDTFA 항소국 결정서 일자
- CDTFA 항소국 결정서 사본
- 서명 (본인 및 대리인, 해당 시)

OTA가 항소 요청서에 제공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OTA는 30일 이내에 누락된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OTA는 이 절차 중에 제출된 문서만 고려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항소를 제출하십시오.

온라인 제출:

OTAP(조세심판국 포털): 전자적으로 항소를 제기하려면 appeal.ota.ca.gov를 방문하십시오. OTAP는 납세자, 그 대리인 및 세무 기관 간의 안전한 통신을 허용합니다.

우편 주소:

State of California Office of Tax Appeals
P.O. Box 989880
West Sacramento, CA 95798-9880

팩스 번호: (916) 492-2089

우편 발송 증명서나 팩스 송신 확인서도 포함하여 제출한 모든 문서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OTA는 귀하의 항소 접수 시 서면으로 확인서를 발송합니다. 이 확인서가 귀하의 항소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의 및 지원:

- **옴부즈퍼슨:** 자원이나 정보가 필요하시면 OTA 옴부즈퍼슨에 info@ota.ca.gov 또는 (916) 206-4355로 연락하십시오. OTA 직원은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없으나, 절차적 문제와 무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 자원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 **OTAP:** 항소 상태 확인 및 담당 분석관과의 소통을 위해 OTAP을 이용하십시오.